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1호로 2023년 11월 10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우리구 조례중 옥외광고물 등 신고·허가 수수료 [별표3] 기준 중 일부를 개정, 타 구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현행화하여 세수 확보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자게시대 수수료 인상 (6천원 → 1만원)
- 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 조명 또는 단순조명) 수수료 신설(1.5배 적용)
- 다. 입간판 수수료 신설(4천원)
- 라. 「비고」 부분에 변경과 연장 등 2건이상 동시 신청시 해당 수수료 중 더 중한 1건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11. 9.~ 11.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우리구 조례중 옥외광고물 등 신고·허가 수수료 [별표3] 기준중 일부를 개정, 타 구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현행화 하여 세수 확보를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과 타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 전자게시대 수수료 인상 (6천원 → 1만원)

전자게시대 수수료	기 관 수	자 치 구
6천원	14기관	영등포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1만원	8기관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기타	3기관	중구(주지이용간판의 2배), 강북구(6,000원~), 양천구(부과하지 않음)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 조명 또는 단순조명) 수수료 신설(1.5배 적용)

1.5배 수수료	기 관 수	자 치 구
부과	24기관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미부과	1기관	영등포구

- 입간판 수수료 신설(4천원)

입간판 수수료	기 관 수	자 치 구
4천원	21기관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5천원	1기관	종로구
미부과	3기관	영등포구, 광진구, 동작구

- 「비고」 부분에 변경과 연장 등 2건 이상 동시 신청 시 해당 수수료 중 더 중한 1건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 신설

2건 이상 신청 시 수수료	기 관 수	자 치 구
중복 부과	13기관	영등포구, 중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중한 1건에 대해 부과	12기관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 검토결과

- 서울시 타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 및 신설하여 세수 확보를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의 정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